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11. 2.(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36차 및 제3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8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결안건 나>, <의결안건 다> 및 <보고안건 가>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결안건 나>, <의결안건 다> 및 <보고안건 가>를 논의 후 비공개 안건인 <의결안건 가>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나. 2018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17-39-237)**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사항 나> ‘2018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인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018년도 공익채널의 경우 공익성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 과반수 동의로 선정 건의한 육아방송을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인정조건은 ‘17년도 인정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을 ‘18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화면해설 방송의 편성비율

을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따라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인정조건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17년 8월 31일 기본계획을 의결하였고, '17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공익채널입니다.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를 선정하였고, 심사위원회가 육아방송을 추가 선정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입니다. 한 방송분야에서 특정 사업자의 채널이 모두 선정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고, 공익채널의 방송분야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새로운 방송분야 채널에 대한 진입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기 선정사업자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항목 내 별도의 감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다년간 연속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다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채널입니다.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법인이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현행 액세스 중심의 장애인방송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용상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확대가 필요하고, 화면해설 방송의 편성비율을 계획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자금계획에서 유동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채널로 공익성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 과반수 동의로 선정 건의한 육아방송을 추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 인정조건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11월 중에 공익채널 선정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이번 공익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선정과 인정에 관한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점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특히 공익채널에는 3개가 성적순으로 채점 순으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심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로 1개 정도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육아방송이 네 번째로 나타났는데 육아방송은 그동안 10년간 선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제도에서 특히 지난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해서 사업 당초의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이번에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해서

실질적인 감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1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에 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했다더라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서 그렇게 되면 더 사업을 이행하는데 신경을 썼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고지가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심사위원들이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마침 650점 이상 합격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정하는데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 육아방송을 넣어서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정할 때는 이렇게 예측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낼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부분만을 내도록 유도하는 정책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점제도를 정성평가 비계량평가로 했는데 이것을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 감점제도를 제도적으로 평가항목에 정식으로 채점 항목에 넣어서 계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고시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관련된 부분을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의 형태로 해서 보고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아예 고시화 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시로 만들게 될 경우 이런 부분을 반영할지 여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위원님들도 고시 제정 아이디어가 나오면 잘 들여다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이 보고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몇 가지 건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전문편성 범위가 채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편성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적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을 제출할 때 해당 채널 실적과 법인 전체 실적을 구분해서 제출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회의록도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먼저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 그리고 사무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익 및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이나 인정되면 송출 확대 이외 별도의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현재로서는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의무송출 대상이 된다는 것 외에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선정된 채널에 대해서 분기별로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점검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장애인복지채널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인정 조건으로 올해 부가한 인정 조건과 비슷하게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화면해설 방송비율을 높일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데, 다만 화면해설 방송 부분에 대해 계획 대비 상반기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이행추구를 하고 내년에 이행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사업계획 실적이 많이 저조하면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제재하거나 사업계획 이행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제도가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방송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회 의견 가운데 다년간 연속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다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따라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정책효과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내지 5년 단위로 끊어서 원래 목표했었던 정책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도 그런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공익성 방송 분야 고시개정(안)에 관한 건 (2017-39-238)**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다> ‘공익성 방송 분야 고시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공익성방송분야 고시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에서 기 보고한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17년 8월 31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고, 9월 20일 공익성방송분야 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 및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였고, 10월 중에 규제심사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분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교육지원' 분야를 '교육 및 지역'분야로 변경하고, '교육 및 지역'분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전문편성내용에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11월 중에 관보 게재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일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에 새로 편성분야를 분화시켜서 확대한 것인데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정보에 관련된 이런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PP가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많지는 않은데 지금 지역민방에 후속프로그램들 송출해 주는 나인컬러스라든가 MBC넷과 같은 쇼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PP들이 있고, 지역산업이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농업경제 방송이나 농수산TV 이런 TV채널들이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래서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정보제공 분야를 신설하는 의미에 맞게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 상황 및 시장성에 대해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가 세분화되면 그 지역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들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것만 가지고 당장 관련 PP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익채널로 추가로 선정됐을 때 그런 PP들이 보다 더 많은 플랫폼에 송출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유발효과로 관련 채널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 방송현실을 보면 지역방송이 대개 재정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PP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큼니다. 그래서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현안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나마 지금 바뀐 예전의 미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방송현업을 알고 있으니까 지역방송 활성화,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역이라는 단서가 일단 붙기 때문에 가령 공익성 분야로 지정이 되면 이것이 실제 방송되는 것이 지역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될 것인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많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어차피 공익채널로 선정될 경우에 전국에 있는 모든 플랫폼들에서 의무송출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지역 관련 사항을 다른 전국에 예를 들어 부산의 지역에 관한 정보들이 전국적인 관심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광주나 춘천에서 그것을 송출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를 들면 지역과 관련된 채널이 말 그대로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일 수도 있

지만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농수산채널이라면 각 지역의 농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역채널이지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배추값이 어떻게, 무값이 어떻게 하는 것은 지역에 관한 정보는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고시를 새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보면 지역산업, 또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논의했으니까 좋습니다만 실제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아마 제 생각도 표 위원님과 비슷한데 한국 같은 사회에서 지역적인 특성만 가지고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지역채널들이 연합해서 나인칼러스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로 들어오면 아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열어두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케이블TV 공동주택 단체계약과 관련해서 개별가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해지 거부를 포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체부신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2012년에 제정하고 이후 실태점검 및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단체계약 관련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5대 MSO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단체계약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는 각 권역별로 단체가입자가 많은 5대 MSO 및 이들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공동주택을 샘플조사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7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단체계약 체결에 따른 개별 동의, 단체가입 사실의 주기적 고지 여부, 신규 전입세

대에 대한 동의절차 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단체계약 현황입니다. 단체 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입니다. 참고로 쌍방향 서비스인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부가서비스 이용 시 세대별 과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체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또 단체계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케이블TV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개별 가입자들의 요금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징수해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합니다. 단체계약 가입 현황을 보면 5대 MSO의 전체 가입자 1,203만명 중 단체가입자는 현재 138명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2년도 208만명까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16년 말 현재 138만명으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계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SO 사업자들이 가입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지는 과거에는 관리사무소가 개별가구의 해지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라서 가입자의 해지요청 시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지권한이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현재는 방송사업자도 직접 해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첫째, 단체계약 가입자 개별동의 확보가 미흡합니다. 단체계약은 개별 동의가 필수적인데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유를 대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자나 관리사무소의 노력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동의 누락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입이나 전출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의 누락 비율이 무려 75%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체계약 가입자 주기적 고지 미이행입니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단체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단체계약 사실을 주기적으로 개별 가구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단체계약 체결 시에만 고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를 통해 매달 단체계약 요금 납부사실이 고지서를 통해 고지되기는 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여타 항목과 함께 굉장히 작은 글씨로 고지되기 때문에 단체계약 가입자는 요금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 번째, 전입세대에 대한 동의절차 미준수입니다. 단체계약 체결 이후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단체계약 가입동의를 받은 다음에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신자나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소형평형의 경우 이사가 빈번해 가입동의 누락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리비 청구서상 단체계약의 명칭이 불분명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통합청구되는 단체계약 시청료의 항목명이 명확해야 가입자들이 가입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유선비, 통신유지비 등 이렇게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개선 방안입니다. 금번 개선 방안의 요지는 단체계약 관련한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철저한 개별동의 확보, 주기적 통보 등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개별동의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사업자는 개별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주기적 통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소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등으로 단체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지방법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규 전입자에 대한 개별동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모든 단체 계약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를 받은 다음에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관리비 청구서상 단체계약 요금 명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요금 명칭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12월 다음 달부터 제도개선(안)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단체계약 제도 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기 위해 정례 반상회 안건으로 홍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하여금 단체 계약 개별 동의, 단체사실의 주기적 통보 관련 매년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비 청구서상 단체계약 요금명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관리사무소와 협의한 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공동주택의 주거형태를 보면 앞으로는 더 많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점점 핵가족화되고 또 신혼부부가 이사를 자주 빈번하게 옮기는 상황인데 이것은 아닐로그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실질적으로 대부분 IPTV나 디지털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아닐로그 시청요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 요금이 6,000원 정도 되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2,500원부터 6,600원까지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5,000원 안팎으로 자기가 매달 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고지서에 반드시 'TV수신료 단체계약'이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고 '수선비'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방송사업자나 관리사무소는 그냥 놔두면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개별로 호별 방문을 거부하기 때문에 개별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연 이것이 강제적인 집행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선사항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니까 행안부와 함께 협력해서 반상회 안건으로 올린다는데 반상회 참석률 혹시 아십니까? 아주 저조할 것입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거기에서 해 봤자 관리사무소와 또 입주자 협의단체와 가까운 분들만 반상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일반 입주자에게 이런 사항들이 알려지기는 굉장히 한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고 점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문화 돼서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여튼 개선방안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특히 단체계약 요금명칭을 반드시 바꾸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주할 때는 한번 볼 것 아닙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럴 때는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꼭 개별동의를 받도록 관리사무소를 움직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을 잘 발굴했습니다. 그래도 5,000~6,000원 소액이라고 하지만 디지털이나 IPTV를 가입한 사람은 이중으로 내는 셈이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자기도 모르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입주자들이 그것을 빨리 깨닫게 하고, 결국 호별 방문이 어렵다면 입주자가 본인이 깨달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 뭐야? 왜 내가 모르는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액션이 나와야만 이것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 수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용어를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래서 고지서의 명칭 정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사업자들에게 다 받아서 무슨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몇 가지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자에게 공고해서 그중에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용어의 예를 2가지면 2가지, 3가지면 3가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준비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가지 문제점들에 관련된 개선사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적절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단체수신계약과 관련해서 실태점검조사를 했다고 했었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2013년과 올해 점검결과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이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점검한 결과, 가이드라인을 '13년도에 개선했는데 그때 주로 점검할 때 저희가 본 것이 주기적으로 고지하는지 여부가 그때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지할 때 관리사무소 명의로만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 가구에서 원하더라도 이것을 해지할 수 없었는데 방송사업자에게 해지하겠다고 통보해도 할 수 있게 개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개별동의를 철저히 받도록 하는 문제, 명칭 문제, 그 다음에 전입세대, 새로 이사 오는 가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여기 자료에도 보듯이 5대 MSO를 대상으로 조사하긴 했지만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나 IPTV 가입자는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입자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38만 가구가 단체가입 대상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빨리 해소 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문제점을 파악했고 개선방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대로 잘 시행해 주십시오. 이것 외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해지 방어나 임의가입, 허위 요금청구 등 이용자 이익 침해와 관련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정기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신승한 방송시장조사과장

- 작년 12월에 전체 MSO 사업자들과 IPTV사업자 3개사와 유선방송에 대해서 해지방어라든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 1년 동안 조사해서 연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자로 따진다면 케이블만 해도 1,400만 가구가 넘고, 그래서 전수조사 하다 보니까 거의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획조사를 했었고 사안별로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카테고리를 묶어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홈쇼핑까지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특정해 드리겠습니다. SO 사업자들, IPTV사업자들,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우리가 매년 신문고라든가 자체 민원이라든가 과기정통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입수해서 아까 이야기한 해지방어 행위, 임의가입 행위, 허위 요금청구 행위들에 대해서 원래 매년 정례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김석진께서는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그 안건을 의결할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매년 정례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연말쯤 되면 개선도 하면서 정상 참작해 달라고 해서, 당시 특정하게 주기적으로 하지 말고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수시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말이 가도록 전혀 보고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 하는 것입니다.

○ 신승한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1년 동안 했는데 그때 나온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어떤 조치를

했었냐 하면 사업자별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각 사업자별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초부터 구축을 해서 10월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부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히 민원이 빈발한 분야, 그다음에 어떤 사업자가 민원이 많은지를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중에서 특정 SO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 이용자 관리행태가 지적되고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이가 없습니다. 내부 자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대부분의 경우 우리 소관입니다. 과장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 **신승한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실제 우리 국감 때 지적은 받지 않았지만 과기정통부에서 국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특정 SO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는 실제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례조사나 기획조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다면 사업자들이 그런 행태를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 우리가 정례조사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서 원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지난 제3기 때 보십시오. 매년 연말에 한 번씩 안건으로 올려서 제재를 했습니다. 올해는 물론 조기 대선도 있었고 새 정부 출범도 있었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제 기억으론 금년에 우리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제재했다는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이용자 이익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 **신승한 방송시장조사과장**

- 지금 티브로드 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저희 쪽의 서면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권을 가진 과기정통부와 저희 방통위와 다음 주에 합동조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획조사와 정례조사 SO, 그다음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들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심하다면 조사해서 제재해야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10시 24분 】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17-39-236) (비공개)**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국회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9분 폐회 】